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4502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4. 3.
판 결 선 고	2015. 5. 1.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 8. 2.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추징처분과

   나. 2012. 8. 8.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9.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redacted]지사는 [redacted]군 [redacted]읍·[redacted]읍 일대의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관하여, 1997. 2. 6.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1998. 12. 26. 지역균형개발법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강원도고시 제1998-258호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원고를 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강원도고시 제1998-258호]

1. 시행자 : 원고
2. 사업의 명칭 : [redacted]조성사업
3. 사업이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읍 일원 / 면적 : 11,570,000㎡
4. 사업의 개요 및 시행기간
   - 시설내용 : 카지노, 호텔, 콘도, 테마파크, 스키장, 골프장, 종업원사택 주차장 등 기반시설 사업 1식 / 총사업비 : 961,688,000,000원
   - 시행기간 : 1988. 12. ~ 2010. 12. 31.

다. 이 사건 [redacted]조성사업은 각 사업지구별로 ① 카지노·호텔사업, ② [redacted]스키장사업, ③ [redacted]골프장사업, ④ [redacted]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있고, 원고는 1999. 6. 30. 약 15년의 시행기간동안 3단계에 걸쳐 위 각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각 사업의 시행단계에 따라 [redacted] 조성사업의 지정권자인 피고(지역균형개발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에서 피고로 변경됨)로부터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위 기본계획에서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사업은 3단계 실시예정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이하 고시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일부인 [redacted]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라. 한편, 정선군은 2004. 3.경부터 2004. 7.경까지 사이에 [redacted]군 [redacted]읍 지역주민들, 주식회사 동원, 원고와 사이에 위 [redacted]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redacted]의 탄광 폐광 후 대체산업개발에 관하여 협의한 다음, 주식회사 동원으로부터, 2004. 9. 3. 이 사건 사업 예정지에 속하는 동원탄좌부지(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5 외 63필지 133,854㎡)를 매입하고, 2005. 3. 10. 위 부지 지상 동원탄좌건물을 석탄역사체험장 조성 조건으로 기부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9. 정선군으로부터 위 동원탄좌부지 64필지(133,854㎡)를 매입하는 이외에 2005. 1.경부터 2008. 11.경까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대 토지 8,102.69㎡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추가로 매입하였고, 2008. 11. 13. [redacted]군으로부터 위 [redacted]건물 3개동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2008. 1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사업부지와 양도받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05. 3. 11.부터 2008. 11.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1] 제27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

1) 이 사건 각 감면처분 및 각 추징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걸쳐 있으나, 위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은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동일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득세 및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이하 '이 사건 감면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5. 16. 원고에게 지방세 과세예고문을 보내고, 원고가 2012. 7. 19. 강원도지사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을 받자, 2012. 8. 2. 및 2012. 8. 8. 원고에 대하여 각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3조,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마항 기재와 같이 감면해주었던 취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는 처분(2012. 8. 2.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 합계 898,414,680원 추징 처분, 2012. 8. 8.자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세금 합계 215,420원 추징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추징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12. 12. 감사원에 이 사건 각 추징처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2. 13. 감사원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 17,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취득하였고, 2007년부터 동원탄좌건물, 수직갱타워 및 동원탄좌부지 내 650갱도에 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 일부는 일반 관광객에게 개방하였으며, 석탄유물을 보존·관리하는 등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redacted] 조성 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해나가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시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2) 가사 원고가 정밀안전진단, 보수공사 등을 시행한 동원탄좌건물, 수직갱타워 및 650갱도 부지만을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그 이외의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최종 취득일인 2008. 11.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 즉, ① 2009. 10.경 감사원으로부터의 사업내용 조정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그로 인한 피고와의 중복사업 조정을 위한 협의 실시, ②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정선소방서, 피고에 의한 부지 사용 협조 요청으로 인한 이 사건 사업 사업부지 변경 결정 등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2014. 5. 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공고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동원탄좌건물, 수직갱타워, 650갱도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고시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고시된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각 추징처분일인 2012. 8.경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기존 동원탄좌건물만을 임시로 개방하는 등 사실상 사업 준비단계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고시된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2005년 ~ 2008년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과정

가) [redacted]은 2004. 9. 3. 주식회사 [redacted]으로부터 [redacted]부지([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5 외 63필지 133,854㎡)를 매입한 다음 2004. 12.경 위 [redacted]좌부지를 2005년에 원고에게 매각한다는 내용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2005년 정선군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나) 정선군은 2005. 3. 10. 주식회사 [redacted]으로부터 [redacted]부지 지상 [redacted]건물을 석탄역사체험장 조성 조건으로 기부받았다.

다) [redacted]은 2005. 4.경 [redacted]부지 내에 산재해 있는 석탄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시행주체를 정선군, 사북번영회(지역단체), 원고로 하되 실제 석탄유물보존사업의 시행은 사북번영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석탄유물 관리 보존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는 위 석탄유물 관리 보존계획에 따라 시행기간인 2005. 4.부터 2007. 3.까지 석탄유물보존사업에 사업자금 7억 원을 지원하며 위 석탄유물보존사업이 완료되면 수집유물을 정선군으로부터 기증받는 내용의 석탄유물보존사업 지원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한 다음 위 석탄유물보존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였다. 사북번영회는 정선군의 위탁을 받아 2005. 4.경 석탄유물보존사업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2. 29. 정선군으로부터 위 동원탄좌부지 64필지(133,854㎡)를 매입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마) 피고는 2007. 1. 15. 원고에게 동원탄좌건물을 석탄유물전시관으로 보존하고 동원탄좌부지 일대를 석탄역사체험장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3.경부터 2008. 1.경까지 ① 이 사건 사업을 기본계획보다 앞당겨 2단계 실시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강원랜드 2단계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② 동원탄광부지 내 650갱도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실시한 다음, 2008. 3. 14. 원고의 이사회 의결로 위 2단계 사업에 이 사건 사업 추진을 포함하기로 승인하였다. 원고는 2008. 4.부터 2008. 12.까지 사이에 피고, 정선군의회, 사북읍 지역단체 등과 총 49회의 이 사건 사업 관련 협의를 거쳤고, 2008. 11.까지 동원탄좌부지 이외에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사업 예정 부지 중 일부(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대 토지 8,102.69㎡)를 각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

바) 사북번영회가 시행한 석탄유물보존사업이 예정 시행기간을 초과하여 2008. 3.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2008. 11. 13. 정선군으로부터 동원탄좌건물 3개동과 석탄유물 약 14,000점을 양도받았다.

2) 2009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가) 원고는 2008. 12. 8. 사북번영회와 사이에 석탄유물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사북번영회와 사이에 위 관리용역 계약을 1년 주기로 갱신하였다), 2009. 1.부터 2009. 3.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사이에 동원탄광부지 내 광해방지 사업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음,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동원탄광부지 내 650갱도 임시개통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고 있던 2009. 11.경 감사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정선군이 추진하는 고한 삼탄광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내용이 서로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사하고 사업지가 밀접하여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원고와 정선군이 서로 협의하여 각 사업내용을 조정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1. 6.부터 2010. 2. 18.까지 사이에 정선군, 사북번영회, 고한사북남면공동추진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를 거쳤다.

3) [redacted]운영 상황([redacted])

가)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석탄유물관리 보완사업(유물보관대 제작, 레일 보수, 650갱도 진입부 주변환경개선 및 꽃밭 조성공사, 인차 수리 등), 동원탄좌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공사 등을 실시한 다음 2010. 11.경 동원탄좌건물을 석탄유물보존관으로 운영하면서 임시로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부터 2011. 8.까지 650갱도를 석탄유물전시체험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축전차·인차 수리 및 신규제작 공정을 거쳤다.

4) 사업부지 변경

가) 원고는 2011. 3. 21. 동원탄좌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재공고하여 2011. 4.부터 2011. 11.까지 위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경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동원탄좌부지 내 수질정화시설 설치를 이유로 위 부동산 중 골말지구 부지의 무상사용을 요청받았고, 2012. 1.경 정선소방서로부터 119안전센터 신축을 이유로 있도록 위 골말지구 부지의 무상임대를 요청받았다. 원고는 2012. 3.경 이사회의 의결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골말지구 부지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사업부지 중 일부(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4 잡 17,340㎡)를 군립의료원 설립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 부동산을 이 사건 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광문화광관촌 조성사업부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9.경 이사회의 의결로 위 부동산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와 같이 사업부지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2013. 2.경 동원C지구(동원탄좌부지 일대) 개발구상 보완 용역을 거친 다음 2014.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5) 이 사건 각 추징처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8. 2. 및 2012. 8. 8. 이 사건 각 추징처분을 하였다.

나) 1998. 12. 26. 이 사건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이 강원도고시 제1998-258호로 고시된 때부터 위 각 추징처분 시기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이 사건 사업 진행과정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 4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강원도고시 제1998-258호로 고시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1988. 12.경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사북읍 일대에 탄광문화관광촌을 비롯한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등을 설립하는 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위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중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미 개발·조성된 사업의 운영에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광문화관광촌 등을 조성하기 위한 정지작업, 시공, 유지, 보수 등 부동산에 행해지는 모든 사업 시행 공정에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다만 부동산이 직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제공되지 않는 사업타당성 평가 및 설계 등 준비행위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14620 판결 등 참조).

2) [redacted]([redacted] [redacted]군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5 외 [redacted]필지 133,85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원탄좌부지를 매입한 2005. 12. 29. 당시 이미 동원탄좌부지 소유자였던 정선군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북번영회에 시행을 위탁하여 동원탄좌부지 내의 석탄유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석탄유물보존사업에 7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업을 보조하였으며, 위 석탄유물보존사업은 2005. 4.경 시작하여 2008. 3.경 종료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11. 13. 정선군으로부터 수집된 석탄유물과 동원탄좌건물을 무상양도받은 다음 2008. 12.경 사북번영회에게 수집된 석탄유물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의 동원탄좌부지 취득일인 2005. 12. 29.부터 동원탄좌부지에 대하여 감면된 재산세 등의 추징처분의 과세요건 성립시기인 2008. 12. 30.(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경과일)까지 위 동원탄좌부지에서는 석탄유물보존사업 및 석탄유물관리사업이 진행되었는데, 탄광문화관광촌 조성을 위해서는 그 부지 내에 산재해있던 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탄유물들을 수집하여 보존·관리하는 사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였고(만일 정선군이 위 작업을 선행하여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동원탄좌부지를 취득한 다음 수행하였어야 할 작업이다), 원고가 그 석탄유물보존 및 관리사업의 시행주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그 사업이 동원탄좌부지 내의 석탄유물들을 조사하고 수집·발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석탄유물보존 및 관리사업은 위 동원탄좌부지를 직접 사용하여 탄광문화관광촌을 조성하는 사업과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이 사건 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동원탄좌부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이를 고시된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반영하여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한 바가 없고, 석탄유물보존 및 관리사업은 사북번영회가 정선군 내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동원탄좌부지 등을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직접 사용' 여부는 취득한 부동산이 고시된 개발사업의 본래 용도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부동산에 관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어 고시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그 '직접 사용'의 방법이 원고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redacted]건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1. 13. [redacted]군으로부터 석탄유물과 함께 동원탄좌건물을 무상양도받은 다음 사북번영회와 사이에 석탄유물위탁관리용역 계약을 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결하였고, 2009. 1.부터 2009. 3.까지는 동원탄광부지내 광해방지사업 협의를,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는 동원탄광부지 내 650갱도 임시개통공사를 각 실시하였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청에 따라 피고 등과 사이에 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음 2010. 5.경부터 2010. 11.경까지 사이에 석탄유물관리 보완사업, 동원탄좌건물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2010. 11.경 위 동원탄좌건물을 석탄유물 보존관으로 운영하면서 임시로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동원탄좌 건물을 취득한 2008. 11. 13.부터 2010. 11.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일환으로 동원탄좌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한 광해방지사업, 안전정밀공사, 보수·유지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동원탄좌건물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이를 고시된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4) 그 이외의 토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로 2005. 1. 19.부터 2008. 11. 13.까지 사이에 동원탄좌 부지 및 동원탄좌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석탄유물보존사업을 비롯한 정지작업,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을 행한 바는 없고, 다만 탄광문화관광촌 사업부지 전부에 대하여 2011. 4.부터 2011. 11.까지는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2014. 5. 27.에는 이 사건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각 실시하여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나머지 부동산을 고시된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나머지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3. 14. 이 사건 사업을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사업의 2단계 실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8. 4.부터 2008. 12.까지 정선군, 의회, 지역단체 등과 [redacted] 조성사업 관련 협의를 거쳤고, 2008. 11. 13. [redacted]군으로부터 석탄유물과 [redacted]을 무상양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 점, 정선군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동원탄좌건물을 보존하고 석탄유물을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석탄유물과 동원탄좌건물을 [redacted]군으로부터 양도받아 그 규모나 수준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거나 설계작업을 실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2008년 이전에는 탄광문화관광촌을 설계한 다음 시공 단계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09년부터 [redacted]부지 내 광해방지사업, 650갱도 임시개통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2009. 11.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정선군이 추진하는 고한 삼탄광산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업내용을 조정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청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redacted] 조성을 위한 설계 및 시공 단계에 곧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2010. 1.부터 2010. 2.까지 정선군 등 관련기관과 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음 다시 2011. 4.부터 2011. 11.까지 위 조정 협의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재실시하였다. 위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이 종료될 무렵부터 2012. 5.까지 사이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정선소방서, 정선군으로부터 사업부지 무상사용 등의 요청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사업부지를 축소·변경한 다음 2013년에 최종 확정된 사업부지를 토대로 이 사건 사업 개발구상 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완 용역을 거쳐 2014. 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 사건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2008년 이후에도 원고가 즉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여 시공 단계에 나아가지 못할 사정이 각 사업 시행 단계마다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을 취득한 2005년 내지 2008년부터, 그 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것을 포기하거나 고의로 사업일정을 지연·방치시킨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탄광 개발사업의 특성상 발생하였거나 관련 행정청과의 협의 또는 요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위 사정들로 인해 원고로서는 사업시행시기 자체가 늦어지거나 또는 사업계획이 수정·변경되어 처음부터 사업타당성을 재분석하고 설계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사정은 구 지방세법 제277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부동산을 그 각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redacted]부지 [redacted]월지와 [redacted]건물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된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중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추징처분은 과세요건이 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처분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추징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별지 1]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처분 내역

(단위: 원)

구분	취득일자	부동산	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계
			토지	건물					
1	2008. 11.13	건물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03 1동 101 호		10,388.65	61,248,940	6,124,880	40,560,850	7,474,910	115,429,580
2	2008. 10. 8.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4 외 1	118.53		853,200	85,300	853,190	157,220	1,948,910
3	2008. 10. 8.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4 외 1	118.53		853,190	85,300	853,190	157,220	1,948,900
4	2008. 10. 8.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4 외 1	237.07		1,706,420	170,630	1,706,420	314,460	3,897,930
5	2008. 10. 8.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24 외 1	296.33		2,133,040	213,290	2,133,040	393,080	4,872,450
6	2008. 10. 8.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4-14	217.00		1,265,630	126,550	1,265,630	236,940	2,896,750
7	2008. 9. 30.	토지, 건물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4-6	110.00	29.16	1,117,850	111,780	1,117,850	206,060	2,553,540
8	2008. 6. 30.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7	118.00		687,890	68,770	687,890	127,040	1,571,590
9	2008. 2. 2.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151-4 외 1	2,500.00		2,498,610	249,860	2,498,610	462,720	5,709,800
10	2007.12.27.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6	124.00		804,070	80,390	804,070	148,990	1,837,520
11	2007.11.30.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17	219.00		1,395,850	139,570	1,395,850	258,790	3,190,060
12	2007. 7. 30.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18	116.00		1,405,290	140,510	1,405,290	261,070	3,212,160
13	2007. 8. 21.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5	112.00		439,630	43,960	439,630	81,650	1,004,87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14	2007. 5. 22.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0-4	126.00		850,690	85,050	850,690	156,200	1,944,630
15	2007. 4. 24.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7-1	2,946.00		868,480	86,830	868,480	161,580	1,985,370
16	2007. 2. 5.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8, 389-29	78.00		2,524,140	252,400	2,524,140	470,060	5,770,740
17	2006. 11. 3.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16	132.00		864,400	86,430	864,400	161,250	1,976,480
18	2006. 9. 25.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30	170.00		2,800,660	280,060	2,800,660	522,780	6,404,160
19	2006. 7. 26.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4	113.00		1,536,290	153,610	1,536,290	287,000	3,513,190
20	2005.12.29.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5-5 외 63	133,854.00		312,338,650	31,233,850	312,338,650	58,515,820	714,426,970
21	2005. 9. 26.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6-2	37.74		684,360	68,410	684,360	128,350	1,565,480
22	2005. 9. 26.	토지, 건물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7	112.00	73.99	1,495,720	149,550	1,495,720	280,530	3,421,520
23	2005. 9. 26.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0	34.68		1,260,000	126,000	1,260,000	236,340	2,882,340
24	2005. 3. 18.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6-1	40.60		847,310	84,710	847,310	159,280	1,938,610
25	2005. 1. 19.	토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7-4	26.21		1,079,990	107,990	1,079,990	203,160	2,471,130
계									898,414,66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별지 2]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추징처분 내역

구분	부동산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계
1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5(2008 년분)	5,300	1,060		6,360
2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5(2009 년분)	5,250	1,050		6,300
3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5(2010 년분)	5,230	1,040		6,270
4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5(2011 년분)	5,030	1,010		6,040
5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8(2008 년분)	5,830	1,160		6,990
6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8(2009 년분)	5,830	1,160		6,990
7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8(2010 년분)	5,830	1,160		6,990
8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8(2011 년분)	5,660	990		6,650
9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16(2008 년분)	6,210	1,240		7,450
10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16(2009 년분)	6,190	1,230		7,420
11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16(2010 년분)	6,220	1,240		7,460
12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16(2011 년분)	6,410	1,270		7,680
13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30(2008 년분)	7,920	1,580		9,500
14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30(2009 년분)	7,910	1,580		9,490
15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30(2010 년분)	7,930	1,580		9,510
16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30(2011 년분)	8,160	1,630		9,790
17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4(2008 년분)	5,210	1,040		6,250
18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4(2009 년분)	4,990	990		5,980
19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4(2010 년분)	5,110	1,020		6,130
20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4(2011 년분)	7,230	1,070		8,300
21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7(2008 년분)	8,310	1,660		9,970
22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7(2009 년분)	6,780	1,350	4,160	12,290
23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7(2010 년분)	6,520	1,300	4,370	12,190
24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7(2011 년분)	9,460	1,010		10,470
25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0(2008 년분)	5,280	1,050		6,330
26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0(2009 년분)	4,590	910		5,500
27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0(2010 년분)	4,610	920		5,530
28	주택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9-20(2011 년분)	4,690	900		5,590
계		173,690	33,200	8,530	215,4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3조(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이 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절차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① 건설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고시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자)

①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자

② 국가가 시행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건설부장관이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시행자)

①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이하 "지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② 지구개발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또는 개발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행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내용 및 규모

2.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3. 지역개발사업 시행능력 및 경험

4. 다른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제안에 따라 시행되는 지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시행자의 주소·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환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04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